

우리의사명은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1331

명 칭	내 용
성폭력 이란?	자율성존중의 원칙, 무해성의 원칙, 선행의 원칙정의의 원칙
성폭력 대응지침	수급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언어적, 시각적 행위를 조심한다.

비전재가요양센터

1. 목적

본 지침은 본 기관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과 직장 내 성폭력으로 통칭)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방 및 대응방법을 명시하여 원활한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수급자의 신체의 안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성폭력 및 성폭력의 정의

- 1) '성폭력'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2차 피해'란 동 표준안 제13조 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성폭력과 성폭력 범죄와의 관계

1. 공통점

- 1) 주로 지위 등을 이용한 남녀 불균형한 권력 관계와 퇴폐 및 향락적인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점.
- 2)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에 의해 발생하는 점.
- 3) 상대방에게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과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며 고용에서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인격권과 근로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점.

2. 차이점

- 1)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 특별법', '94. 1. 5 제정)에 그 유형(형법, 특별법)이 열거되어 있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 2) 성폭력은 주로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에 의해 규제되고 그 유형이 성폭력 보다 경미한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써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I. 요양보호사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요양보호사와 방문요양 서비스 대상자가 단둘이 집에 있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대상자가 치매 등의 질병으로 판단이 어려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도 있으므로 재빨리 판단하고 대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 등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성폭력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시설장 및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 요양보호사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1)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 2)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3)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4)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 5) 심리적 치유 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 (성폭력상담소, 여성노동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 6)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2. 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

성폭력이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구 분	내 용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회식 자리 등에서無理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기 타	○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다음의 성적 언동에 의한 성폭력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이며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이 포함된다.

II. 수급자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1. 수급자 성폭력의 정의

“수급자 성폭력”이라 함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서비스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자 성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행 위 자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3. 성폭력의 유형

- 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복되거나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성폭력이 될 수 있다.
- ② 어떠한 경우에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폭력에 해당되는지는 미리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차원에서 사례별로 판단 되어져야 한다.
- ③ 성폭력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구 분	내 용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회음부를 노출 시켜 놓는 행위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 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 한 경우도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 타	○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다음의 성적 언동에 의한 성폭력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이며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이 포함된다.

Ⅲ.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1.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지침

1)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

- ①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다.
- ②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경우에는 전임자에게 성폭력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기관의 규칙에 성폭력 및 성폭력예방과 구제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알아본다.
- ③ 기관 내에 성폭력 및 성폭력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료들간의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는다.
- ④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성폭력 및 성폭력을 당한 동료를 비난하지 않고 공동으로 대처한다.
- ⑤ 기관에 대하여 성폭력 및 성폭력 예방대책의 마련을 촉구한다.

2)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

- ① 음담패설을 삼가고, 직장 내에 음란한 그림이나 사진은 붙이지 않는다.
- ② 직원 및 급여제공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타인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 ③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각 중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 ④ 회식 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 및 급여제공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 ⑤ 직원 및 급여제공직원이 성폭력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2. 성폭력에 대한 예방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제공 직원의 지침

- ① 수급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평소 존칭을 사용한다.
- ②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하지 않는다.
- ③ 평소 수급자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
- ④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시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 ⑤ 수급자의 언어적 표현과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 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 ⑥ 수급자의 명시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여서는 안된다.

2) 급여제공직원에 대한 수급자(보호자 포함)의 지침

- ① 급여제공직원에 대해 음담패설을 삼가고, 집안 내에 음란한 그림이나 사진은 붙이지 않는다.
- ② 급여제공직원에게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기, 안마나 애무 등의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③ 급여제공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 ④ 급여제공직원이 거부 의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각 중지하고, 사적인 행위 및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 ⑤ 급여제공직원이 성폭력 및 성폭력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주위 사람이나 기관에 도움을 청하거나 연락하여 해결한다.

3.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지침
- 1) 성폭력 피해 노인은 노인복지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수시로 상담받을 수 있고, 노인에 대한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2) 공공기관 등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노인을 성폭력한 경우, 피해 노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

3)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 ◆ 관련 법규

☞

누구든지 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 9 제2호)

☞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인복지법」제55조의 3 제1호)